

동두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-89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03. 7. .

제 출 자 : 동두천시장

1. 제안이유

- “동두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” 조문중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상위법인 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”에 맞추어 정비 함

2. 주요골자

- 가. 기간 내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 연장하는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명확하게 정함. (안 제 10조제2항)
- 나. 비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가부를 심의하는 기간 “20일이내”를 “7일이내”로 정하여 행정정보 공개 가부를 신속히 처리하고자 함. (안 제11조제3항)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동두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중 “따로 15일이내”를 “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이내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중 “제10조제6항”을 “제10조제8항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3항중 “20일이내”를 “7일이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공개의 가부결정) ①(생략) ②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에 공개의 가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따로 1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,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③~⑧(생략) 제11조(이의신청) ①청구인은 공개청구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해○정기관으로부터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때와 제10조제6항 규정에 의한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부터 30일이내에 집행기관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②(생략) ③ 제2항의 심의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심의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의 가부를 심의결정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. ④~⑤(생략)	제10조(공개의 가부결정) ①(현행과 같음) ②-----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이내----- -----. ③~⑧(현행과 같음) 제11조(이의신청) ①----- ----- -----제10조제8항----- ----- -----. ②(현행과 같음) ③----- -----7일이내----- ----- -----. ④~⑤(현행과 같음)